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번 호	1301
-------	------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2월 5일 박상구 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06월 18일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박 상구 의원)

1. 제안이유

- 가. 현행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의 날은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을 구(9)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기증자 자체가 아니라 기증된 장기의 수에 주목하여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계 단체(대한이식학회 · 한국장기기증원)의 의견이 있고, 기증의 종류에는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명나눔주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장기기증의 날이 아닌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 나. 시장으로 하여금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서울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의 날을 9월 9일로 지정하게 된 것은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을 구(9)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증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닌 기증된 장기의 수에 주목하여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장기기증 이외에도 인체조직 기능 등을 감안하여 개정된 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은 협행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9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서울시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 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고 하여 생명나눔주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장기기증의 날을 9월 9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장기 외에 인체조직의 기증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명나눔주간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할 것임.

3 집행부서 및 관계단체 의견

- 집행부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왔음.
시민들의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매년 9월 중 둘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 추가하고 기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 삭제하는 것보다 ‘생명나눔 주간’과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함께 실시 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의 날’을 존치 필요

- 관계단체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¹⁾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전국 15개 광역자치 단체가 자치조례를 통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경우에는 2014년 제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기념식과 걷기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인식시켜주어 장기기증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9월 9일이면 ‘오늘은 장기기증의 날’이라고 오프닝 멘트를 할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1) E-mail을 통한 의견제시

금번 개정조례안은 1일이던 장기기증의 날을 1주간의 생명나눔주간으로 확대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민들에게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임을 6년 동안 홍보해 왔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그 지정을 취소하기보다는 생명나눔주간 중에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계속 유지하고 장기기증 홍보를 한다면 개정 취지도 살리고, 장기기증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과 관계단체 모두 같은 의견으로 생명나눔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장기기증의 날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장기기증 이외에도 인체조직기증 등 생명나눔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이를 생명나눔주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집행부서와 관계유관단체는 생명나눔주간으로 확대운영 하더라도 장기기증의 날은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집행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01
----------	------------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1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기존의 장기기증의 날을 존치하면서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여 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도록 수정함(안 제10조 수정)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매년"을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로 한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장기기증 접수 창구 설치) ① · ② (생 략)</p> <p><u>③ 시장은 서울시민 들의 장기등 기증활 동을 장려하기 위하 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 정 · 운영한다.</u></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 창구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시장은 장기등기 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 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u></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 창구 설치)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u>③ 시장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 과 희생정신을 기리 고, 시민들의 생명 나눔문화를 확산하 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 부터 1주간을 생명 나눔 주간으로 운영 한다.</u></p>
<u><신 설></u>	<p>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 한 기념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 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p> <p>① · ② (생 략)</p> <p>③ <u>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u></p>	<p>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u></p>
<p><신 설></p>	<p>④ <u>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축제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p>